



기획재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조정제도 배제 특약 관련 안내

최근 공공계약시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조정제도를 배제하는 특약과 관련하여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관련 국민신문고 답변('23.6.27., 민원 1AA-2036-0260955)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국민 신문고 답변('23.6.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64조는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을 금지하고 있는 특약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의 부당특약에 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끝.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운영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세청장,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병무청장, 농촌진흥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상청장,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 새만금개발청장, 통계청장, 문화재청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특허청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회사무총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청장

행정사무관 **전찬익** 계약정책과장 **정동영** 전결 2023.9.21.

협조자

시행 계약정책과-938 접수 구매총괄과-4854 (2023. 9. 21.)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어진동) / www.moef.go.kr

전화번호 044-215-5254 팩스번호 044-000-0000 / jky820@korea.kr / 대국민 공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